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부과취소

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- 1. 납 세 자 : \*\*\*\*\*
- 2. 부과취소사유 : 착오납부(환급조정세액을 착오로 납부함)
- 3. 건수 및 세액 :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건	14,040,730	14,040,730	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결의결정서 1부.  
 2.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부과취소내역서 1부.  
 3.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환급청구서 1부. 끝.

주무관 **최필순** 지방소득세4팀 **박종수** 세무2과장 代 **이정현** 기획경제국장 전결 04/18  
**김용운**

협조자